

학교법인 상명학원
2025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인원	8인	1인

1.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14:00(회의 소집 안내일: 2025년 9월 11일)
2. 장소: 상명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인원
 - 이사 (8인): 유근혜, 이준방, 윤태수, 김창영, 유인수, 김종희, 김병주, 양용준
 - 감사 (1인): 조항록
 - 불참 인원
 - 이사 (1인): 이영범
 - 감사 (1인): 유남규
4. 안건
 - 1) 법인 임원(감사) 선임에 관한 건
 - 2) 법인 상근임원 보수 책정에 관한 건
 - 3) 대학교 교육용 고정자산 폐기 처분 승인 및 감자에 관한 건
 - 4) 기타 안건

유근혜	김병주	양용준
-----	-----	-----

5. 회의 내용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 말씀에 이어서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간사에게 전회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전회 회의록 전문을 낭독하다.

의장은 전회 회의록 낭독에 대한 누락 및 이상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제1 안건: 법인 임원(감사) 선임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본 법인 임원 중 조항록 감사의 임기가 2025년 11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감사를 선임해야 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먼저 조항록 감사의 의견을 구하다.

조항록 감사는 그동안 법인 감사로서 상명학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했으며, 개인적 사유로 인해 감사직을 연임할 수는 없다고 말하다.

유인수 이사는 조항록 감사의 후임을 논함에 앞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우제완 전 교수를 법인 감사로 선임(임기 3년: 2025. 11. 06. ~ 2028. 11. 05.까지)할 것을 동의하다.

김병주 이사는 동의에 재청하다.

의장은 동의와 재청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우제완 전 교수의 차기 법인 감사 선임(임기 3년: 2025. 11. 06. ~ 2028. 11. 05.까지)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추후 우제완 전 교수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취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문종욱 간사에게 주문하다.

제2 안건: 법인 상근임원 보수 책정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본 법인 김종희 이사의 상임이사 사임서가 2025년 9월 5일자로 법인사무국에 접수되었음을 보고하고 유근혜 이사장에게 상근임원으로서 기존 보수와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책정 및 지급하도록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다.

양용준 이사는 김종희 이사가 상임이사직의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2025년 9월 5일자)을 의결하고, 긴 기간 법인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신 유근혜 이사장에게 법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수를 책정 및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다.

이준방 이사는 동의에 재청하다.

의장은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유근혜	김병주	양용준
-----	-----	-----

제3 안건: 대학교 교육용 고정자산 폐기 처분 승인 및 감자에 관한 건

의장은 위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문종욱 간사는 상명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된 내용연수 초과 사용으로 노후화된 교육용 고정자산 폐기 처분 승인 및 감자에 대한 내용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폐기자산	차량번호	차 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누적주행거리 (2025.8.26.기준)	폐기사유
서울캠퍼스 업무용 트럭	80가5819	봉고III4륜구동	2010.8.13.	15,988,900	58,427km	내용연수 초과사용 등

의장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윤태수 이사 동의와 양용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 안건: 기타 안건

의장은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김병주 이사는 사교조 상명대 지회장인 이승우 교수가 전 구성원에게 단체 메일로 보내고 법인사무국에도 보내온 공개질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우선 이사회 진행 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긴급 안건을 다룰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가결하는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설명하다. 지난 이사회의 경우에도 유일한 불참 이사였던 이영범 이사가 이사회 전일 미리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표하였고, 이사회 직후 동의서를 전달하는 등 안건 가결에 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확한 이상, 해당 안건의 가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다. 소송, 가처분 등 법률상 이의 제기자는 확인의 이익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이해관계자인 불참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전권인 학교장 선출에 관해 해당 대학 교수나 노조의 지회장일지라도 법적 조치를 할 자격이 없으며, 기획처에서 안건 상정 요청한 정관 변경 건 또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양용준 이사는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관련하여 검토해 본 결과 기획처에서 지난 7월,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으로 개정 전 정관에 평의원 추천 주체가 교수회의, 직원회의, 조교회의라고 명시되어 명확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주관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다.

유근혜	김병주	양용준
-----	-----	-----

의장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으로 법인이사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격려하고, 끝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을 본인과 김병주 이사, 양용준 이사로 제안하고 전원 찬성하여 가결 되었음을 말한다.

위의 결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25. 9. 19.

이사장	유근혜 유근혜	이사	김병주 김병주
이사	이준방 이준방	이사	양용준 양용준
이사	윤태수 윤태수	감사	조항록 조항록
이사	김창영 김창영		
이사	유인수 유인수		
이사	김종희 김종희		

유근혜	김병주	양용준
-----	-----	-----